

공유재산(토지) 사용동의안 심사보고서

2013. 12. 6(금)

문화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3. 11. 29

나. 제출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3. 12. 02

라. 상정일자 : 2013. 12. 06 (제212회 임시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)

- 제안설명 : 방운숙 여성가족국장
- 검토보고 :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유한경
- 질의 및 토론
- 동의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우리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들의 여가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특수시책으로 「노인문화센터」 건립을 장려하고 있음.
- 부평구는 타 지역에 비해 노인인구비율이 높으나 동북부지역에 노인복지관 1개소만 운영되고 있어, 서북부지역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좋지 않아 노인문화센터 확충이 요구됨.
- 부평구로부터 사유지 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허가 신청이 있

어 「노인문화센터」를 건립할 수 있도록 부지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가 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1) 시유재산 현황

- 위 치 : 인천 부평구 산곡동 124-72
- 재산현황 : 토지 - 681m²
- 재산실태
 - 노인문화센터 건립을 위하여 노인정책과로 재산이관
 - 현재 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 비전홀 공동작업장으로 사용중
(이전 후 철거예정)

※ 공동작업장 현황

- 작업장명 : 비전홀 공동작업장
- 면 적 : 145m² (가설건축물)
- 개소일자 : 2011년 11월 22일
- 수행기관 : 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
- 종 사 자 : 50명
- 사업내용 : 쇼핑백 조립

- 재산관리관 : 노인정책과장

2) 노인문화센터 건립 계획

- 사 업 명 : 산곡·청천지역 노인문화센터 건립
- 위 치 : 인천 부평구 산곡동 124-72

- 사업기간 : 2014. 1 ~ 2015. 12
- 규 모 : 연면적 2,300m²(지상1층, 지상4층)
- 사업주체 : 부평구청장
- 소요예산 : 6,324백만원(시비 3,162, 구비 3,162)

3) 공유재산 사용허가 내용

- 사용목적 : 노인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
- 허가기간 : 3년 이내 (연장가능)
- 허가면적 : 토지 681m²
- 사 용 료 : 무상(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1호 적용)

3.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(토지) 사용 동의안은 부평 서북부지역의 노인을 위한 노인문화센터를 신축함으로써 지역사회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관계법령¹⁾에 따라 시 소유의 행정재산(토지)을 부평구에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.

공유재산 사용동의안의 주요 허가내용을 보면 부평구 산곡동 124-72의 토지 681m²는 노인문화센터 신축을 위한 용도로 제한하며, 사용허가기간은 관련법상²⁾ 3년 이내이며 행정재산 용도로 계속

1)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0조(사용·수익허가), 제13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, 같은 법 시행령 제9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, 제24조(사용료의 감면)

2)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1조(사용·수익허가기간)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(사용·수익허가)

사용할 경우 갱신을 통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, 사용기간 동안 사용료는 무상으로 할 수 있음.

노인복지관(노인문화센터³⁾)은 노인의 교양·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,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과 소득보장·재가복지,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, 최근 소득의 증가, 교육수준의 향상 등으로 노인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노인교육과 노인여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.

인천시의 경우 노인인구는 280,056명으로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이 9.75%이며, 2013년 10월 현재 18개소의 노인복지관이 설치되어 있으나, 서울은 노인인구비율 11%에 노인복지관 59개소, 경기도 9%에 51개소⁴⁾가 설치된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실정임.

부평구 노인인구는 53,592명(9.6%)으로 타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나 그에 비해 노인여가시설은 부족한 실정이며, 2012년 5월에 건립된 노인복지관 1개소는 동북부지역에 치중되어 있어 서북부지역⁵⁾의 노인을 위한 노인문화센터 건립이 요구되고 있음.

3) 노인복지관이 있으나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역의 노인을 위하여 노인복지관 분관의 개념으로 설치 운영됨.

4) 2013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발간자료 및 안전행정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참고 작성(2012.12.31현재)

5) 불임 부평구관내도 참조

〈인천시 노인복지관 현황〉

(2013.10월말 기준)

구분	계	중구	동구	남구	연수구	남동구	부평구	계양구	서구	강화군	옹진군
노인인구 (명)	280,056	13,786	11,629	50,531	22,643	44,478	53,592	26,038	35,358	17,892	4,109
노인인구 비율(%)	9.75	12.9	15.4	12.3	7.6	8.8	9.6	7.6	7.3	26.8	19.9
복지관 (개소)	9	1	1	1	1	1	1	1	1	1	0
문화센터 (개소)	9	0	1	2	1	0	0	3	2	0	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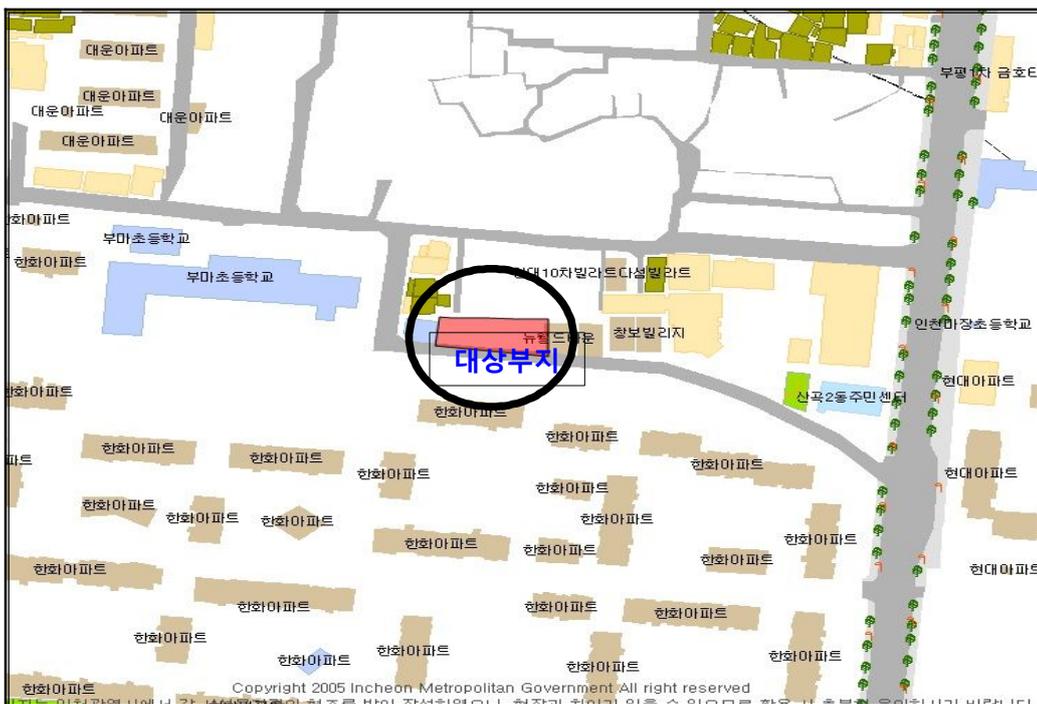
공유재산 사용동의를 요청한 부평구 산곡동 124-72번지는 현재 가설건축물이 축조되어 있고, 부평구노인인력개발센터의 노인일자리 사업장(비전홀 공동작업장)으로 2011.3.1~2013.12.31까지 무상임대 계약중임.

지역특성상 부평구는 구도심지역으로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태로 지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한 부평구 관내 사유지를 활용하여 노인문화센터를 신축함으로써 부지매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,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활력있는 노인문화 형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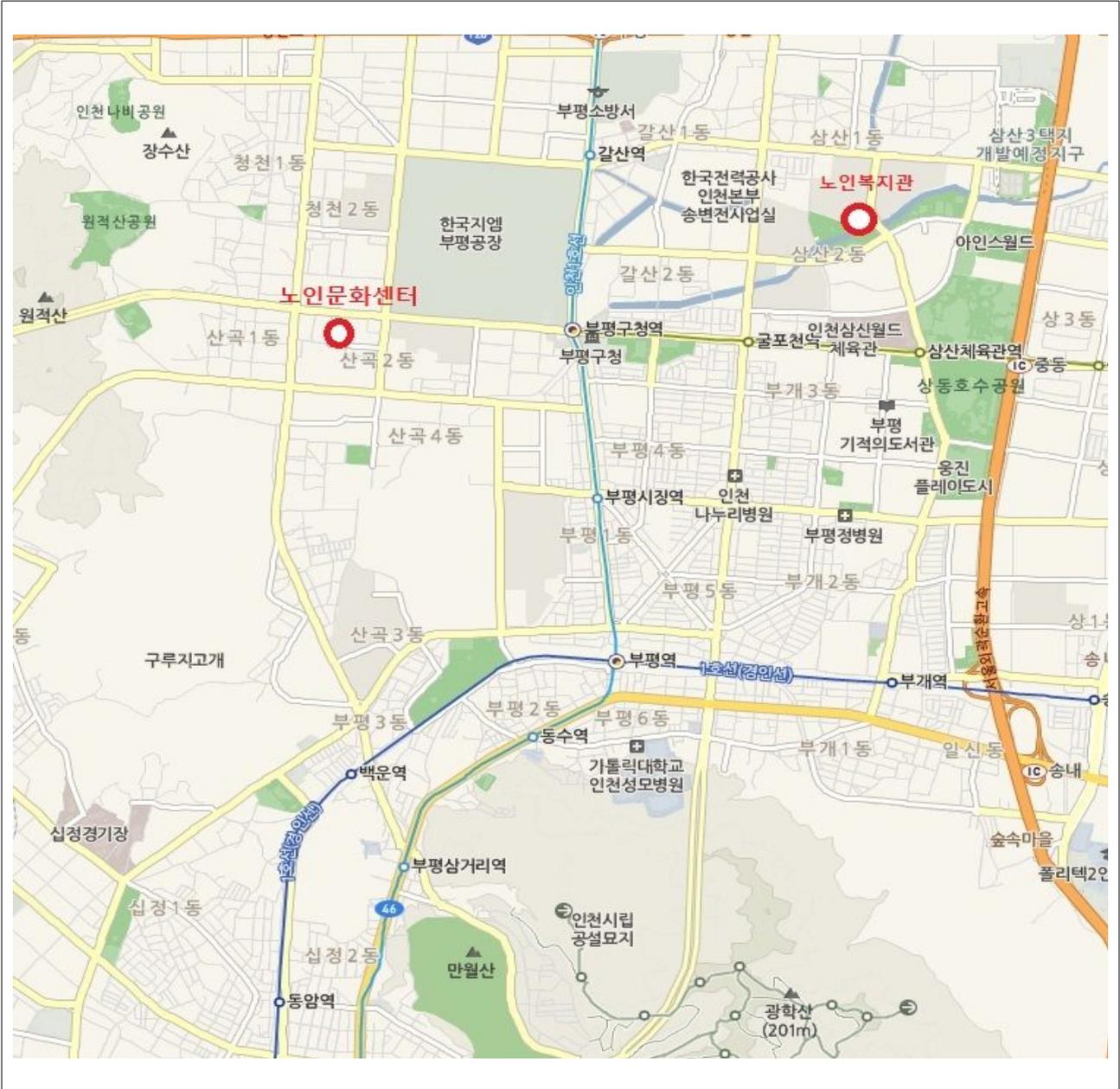
사업계획

○ 사업계획

- 사업명 : 산곡, 청천지역 노인문화센터 건립
- 사업기간 : 2014. 1 ~ 2015. 12
- 위치 : 인천 부평구 산곡동 124-72
- 건축면적 : 450m²
- 연면적 : 2,300m²
- 규모 : 지하1층 지상4층
 - 지하1층 : 주차장, 기계실
 - 지상1층 : 노인인력개발센터(사무실, 공동작업장)
 - 지상2층 : 사무실, 상담실, 건강증진실
 - 지상3층 : 프로그램실, 다목적공간
 - 지상4층 : 강당, 식당 및 조리실
- 사업예산 : 6,324,000천원 (시3,162,000 구3,162,000)
- 위치도



[붙임 - 부평구 관내도]

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< 질 의 >

○ 신현환, 강병수, 박순남, 제갈원영 위원

- 군·구마다 노인여가시설의 수가 차이가 있으며, 특히 용진군은 노인복지관도 없는 이유는?
- 노인복지관(센터)의 신축도 중요하지만 신축 이후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이 중요하므로 운영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, 노인 문화센터의 경우 7명의 직원으로는 업무추진이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사무장급 직원 1명의 추가 증원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.

< 답 변 >

○ 여성가족국장

- 노인복지관(센터) 건립을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부지매입을 전제할 경우 건립비의 50%를 시에서 보조해주고 있으며, 노인복지관이 군·구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지역별로 수요가 없을 수도 있고 부지매입이 어려워 추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며, 용진군은 섬의 특성상 노인복지관보다는 경로당이 활성화되어 있음.

5. 토론요지

- 가. 찬 성 : 강병수·김기홍·박순남·신동수·제갈원영 위원
- 나. 반 대 : 없음.

6. 심사결과

- 동의

7. 소수의견 요지

- 해당사항 없음.

8. 기타사항

- 특이사항 없음.

붙임 공유재산(토지) 사용 동의안 1부. 끝.

- 부평구 산곡동 124-72 노인문화센터 신축을 위한 -
공유재산(토지) 사용 동의안

의안 번호	1057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3. 12. .

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우리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들의 여가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특수시책으로 「노인문화센터」 건립을 장려하고 있음.
- 나. 부평구는 타 지역에 비해 노인인구비율이 높으나 동북부지역에 노인복지관 1개소만 운영되고 있어, 서북부지역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좋지 않아 노인문화센터 확충이 요구됨.
- 다. 부평구로부터 시유지 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허가 신청이 있어 「노인문화센터」를 건립 할 수 있도록 부지사용 및 영구 시설물 축조를 허가 하고자 함.

2. 시유재산 현황

- 위 치 :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124-72
- 재산현황 : 토지 681m²
- 재산실태
 - 노인문화센터 건립을 위하여 노인정책과로 재산 이관.
 - 현재 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 비전홀 공동작업장으로 사용

하고 있음.(이전 후 철거 예정)

※ 공동작업장 현황

- 작업장명 : 비전홀 공동작업장
- 면 적 : 145m² (가설건축물)
- 개소일자 : 2011년 11월 22일
- 수행기관 : 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
- 종 사 자 : 50명
- 사업내용 : 쇼핑백 조립

○ 재산관리관 : 노인정책과장

3. 노인문화센터 건립 계획

- 사 업 명 : 산곡·청천지역 노인문화센터 건립
- 위 치 : 인천 부평구 산곡동 124-72
- 사업기간 : 2014. 1 ~ 2015. 12
- 규 모 : 연면적 2,300m²(지상1층, 지상4층)
- 사업주체 : 부평구청장
- 사 업 비 : 6,324백만원(시비 3,162, 구비 3,162)

4. 공유재산 사용허가 내용

- 사용목적 : 노인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
- 허가기간 : 3년 이내 (연장가능)
- 허가면적 : 토지 681m²
- 사 용 료 : 무상(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적용)

5. 추진경위

- 2008.12. 3 : 노인문화센터 확충계획 수립(부평구 계획)
- 2013. 3~4 : 2013년 시장님 군·구방문 및 시민과의 한마음대화
 - 부평구 노인문화센터 건립 건의에 따른 검토서 제출
- 2013. 5. 7 : 산곡·청천지역 노인문화센터 건립 계획 수립
- 2013. 6. 24 : 공유 일반재산 교환 신청(부평구 재무과→시 회계과)
 - 시유지 : 산곡동 124-72 / 구유지 : 십정동 476-10
- 2013. 7.10 : 시·구유재산 토지교환 불가 통보(시 회계과→부평구 재무과)
- 2013. 7. 8 : 류수용 의원 시정질의 1차 (서면질의 답변 제출)
 - 노인정책과: 노인문화센터 건축물에 대한 건립계획 행정절차 및 예산 확보방안 답변
 - 회계과 : 건립부지에 대한 답변
- 2013. 8. 7 : 시유지 무상대부 및 영구시설물 축조 협조 요청
(부평구 → 시 회계과)
- 2013. 8.30 : 2013~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제출
(시 노인정책과 →시 예산담당관실)
 - 2014년 계획 : 2,050백만원(부평구 당초 건립계획 사업비 기준)
- 2013. 9. 2 : 2014년 본예산 e-호조 입력마감
- 2013. 9. 9 : 2014년 본예산 예산 신청(부평구 →시 노인정책과)
 - 사업비 변경전 : 총 사업비 4,100백만원(시비 2,050백만원 요구)
 - 사업비 변경후 : 총 사업비 6,324백만원(시비 3,162백만원 요구)

- 2013. 9.9~11 : 류수용 의원 시정질의 2차
 - 시 노인정책과 : 1차 답변내용과 동일
(류수용의원 사무실 설명완료 :건축부지 확보방안 답변요구)
 - 시 회계과 : 건립부지에 대한 답변 제출
- 2013. 9.10 : 2013년 제3차 투융자사업 심사에 따른 군구사업 검토의견 제출
(시 노인정책과 → 시 예산담당관실)
- 2013. 9. 10 : 무상부지 대부 관련 회의
 - 시 회계과, 시 노인정책과, 부평구 노인장애인과, 부평구 재무과
- 2013. 9. 13 : 2014년 본예산 시비 예산반영 요청(부평구 → 시 노인정책과)
- 2013. 9. 16 : 2014년 본 예산 시비 예산 요구(시 노인정책과 → 시 예산담당관)
- 2013.10. 18 : 사유지 영구축조물 축조 제외 조항에 공용건축물 관한 법률 자문 의뢰(시 노인정책과 → 법무담당관실)
- 2013.10.22 : 2013년 제3차 투융자사업 심사결과 ⇒ 재검토
 - 재검토 사유 : 부지 및 재정여건 감안
- 2013.10.22 : 법률 자문 회신(법무담당관실시 → 노인정책과)
 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상의 공용건축물에 대한 확실한 정의가 없어 우리과에서 법무담당관실에 법률 자문한 결과 노인문화 센터는 공용건축물이라 볼 수 없으므로 사유지 상에 건축 할 수 없음.
- 2013.10.25 : 사유지 무상 사용여부 및 공용건축물 적용가능여부 회신요청
(시 노인정책과 → 시 회계과)
- 2013.11.20 : 시 회계과 관련 질의회신
 - 안전행정부 공기업과-5906(2013.11.18)호에 의하여 공용건축물에 해당됨.
 - 무상사용에 대하여는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 후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관인

노인정책과에서 적용 검토 결정하여야 함.

- 2013.11.21 :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 요청(부평구 → 시 노인정책과)
- 2013.11.22 :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 요청(시 노인정책과 → 시 회계과)
- 2013.11.28 :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(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)

6. 주변여건 검토내용

- 가. 부평구 노인 인구는 53,592명으로 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나 노인여가시설은 노인 인구대비 부족한 실정임.
- 나. 부평 동북부지역은 2012년 5월에 건립된 노인복지관이 1개소 있으나, 부평구에는 노인문화센터가 없어 서북부지역에 노인 문화센터 건립이 요구되고 있음.

〈인천시 노인복지관 현황〉

(2013.10월말 기준)

구분	계	중구	동구	남구	연수구	남동구	부평구	계양구	서구	강화군	옹진군
노인인구 (명)	280,056	13,786	11,629	50,531	22,643	44,478	53,592	26,038	35,358	17,892	4,109
노인인구 비율(%)	9.75	12.9	15.4	12.3	7.6	8.8	9.6	7.6	7.3	26.8	19.9
복지관 (개소)	9	1	1	1	1	1	1	1	1	1	0
문화센터 (개소)	9	0	1	2	1	0	0	3	2	0	0

- 다. 지역특성상 부평구는 구도심지역으로 부지 확보 및 구 재정 여건으로 부지매입이 어려운 상태로 부평구 관내 시유지를 활용하여 노인문화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지역 노인들의 여가 문화 충족에 기여하고자 함.

7. 참고자료

- 위치도 및 현장사진
- 관련법령 발취

□ 위치도 및 사진

▶ 위치도 ◀



▶ 사진 ◀



관련법령 발췌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제13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 재산에 건물, 도랑·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. 다만,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20조(사용·수익허가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·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(隨意契約)으로 허가할 수 있다.

1. 허가의 목적·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2. 생략
- ③ ~ ⑤ 생략

제21조(사용·수익허가기간) ①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으로 받아들인 후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(價額)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기간 이내로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 사용·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·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~ ④ 생략

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·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·수익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·수익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.

제22조(사용료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(料率)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.

- ② ~ ③ 생략
- ④ 삭제

제24조(사용료의 감면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- 1. 국가 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·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
- 2. ~ 4. 생략
- ② ~ ③ 생략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제9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
- 1. ~ 10. 생략
- 11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제12조(사용·수익허가)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
- 2.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3.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13조(사용·수익허가의 방법) ① ~ ②생략

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공법인·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

2 ~ 4. 생략

5. 법 제24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

6 ~ 18. 생략

□ 2013년 노인복지사업안내 II(보건복지부)

3-7. 노인복지관 설치·운영 p 290

- 해당 시·군·구에 노인복지관이 있으나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역의 노인을 위하여 노인복지관 분관 설치 운영 가능.